

의안번호	제 190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연월일 : 2019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제3조)
 - 20명 이내 ⇒ 25명 이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를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u>각 1명</u>을 포함한 20명 <u>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구성) ① ----- ----<u>각각 1명</u>을 포함한 25명 <u>이내</u>의 -----.</p>

관련법령 발취

□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